

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2-11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| 제재대상 | 내용(회사명, 성명 등) |
|------|--|
| 기 관 | |
| 임직원 | ●●●((주)○○ 내부자) ◎◎◎((주)○○ 내부자) ◇◇◇((주)○○ 내부자) ◆◆◆((주)○○ 내부자) |
| 기 타 | |

2. 조치내용

고발 : ●●●

수사기관 통보 : ◎◎◎, ◇◇◇, ◆◆◆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
- ●●●는 (주)○○의 자금조달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자원부 상무로서, 2018.2.28. (주)◁◁◁◁◁◁와의 Kick-Off 미팅에 참여하는 등 「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」 정보 생성에 직접 관여하여 동 정보를 지득한 후, 동 정보가 공개(2018.xx.xx. xx:xx)되기 전인 2018.3.26.에 본인 및 차명의 ♡♡증권 계좌를 통해 ○○ 주식 14,800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
- ◎◎◎은 (주)○○의 연구소를 총괄하는 전무로서, 2018.3.12. 월간 임원회의에서 「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」 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8.3.26.에 본인명의 ♡♡증권 계좌를 통해 ○○ 주식 19,584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

- ◇◇◇은 (주)○○의 생산기술부를 총괄하는 전무로서, 2018.3.12. 월간 임원회의에서 「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」 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8.3.13.~3.15. 기간 중 본인명의 ♡♡ 증권 계좌를 통해 ○○ 주식 24,978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
- ◆◆◆은 (주)○○엔지니어링의 기술위원으로서, 2018.3.12. (주)○○의 월간 임원회의에서 「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」 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8.3.26.~3.28. 기간 중 본인명의 ♡♡증권 계좌를 통해 ○○ 주식 27,034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
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

- ●●●는 (주)○○의 상무로서 2017.7.19. ~ 2018.3.28. 기간 중 ▶▶▶▶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(주)○○ 주식 47,000주를 매수, 30,80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(주)○○ 주식의 소유상황이 변동되어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총 10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- ●●●는 ♠♠♠(주)○○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)의 특수관계인으로서 2017.7.17.~2018.3.26. 기간 중 ▶▶▶▶▶▶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(주)○○ 주식 47,000주를 매수, 30,800주를 매도하여 2018.6.12. ♠♠♠의 대량보유 보고시 함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동 차명거래를 고의적으로 ♠♠♠에게 알리지 않아 총 1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

나. 근거법규

-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제1항 제1호, 제174조 제1항 제1호)
-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6조 제31호, 제173조 제1항)
-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4조 제18호, 제147조 제1항)